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405

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임오경・이기헌・강유정

한병도 · 김재원 · 민병덕

조계원 · 서영교 · 진선미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진흥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민체육 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음.

그런데 융자지원 대상이 체육 용구·기자재(이하 "체육용구등"이라함)를 생산하는 업체 중 우수 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만, 체육과 관련된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에도 일부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어, 지원실적이 저조하고 소외되는 업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개선,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확대하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2항·제3항 및 제22조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2항 중 "지정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 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 융자하게 할"을 "지정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체육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 관련된 용역을제공하는 업종으로서 다음"을 "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"으로, "그"를 "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"로 하며, 같은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체육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"를 "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"로 한다.

- 1.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(業)
- 2.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

제22조제1항제7호 중 "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"를 "제17조제3항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	제17조(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	②
체육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	
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의 체육	
용구등을 생산하는 업체 중 우	
수 업체를 <u>지정하여 서울올림</u>	<u>지정할</u>
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	
하여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	
민체육진흥계정에서 그 자금을	
<u>융자하게 할</u> 수 있다.	
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<u>체육</u>	③ <u>국민</u>
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	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
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체육과	
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	
<u>으로서 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	국민체육
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육성을	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
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	에서 그
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	
체육진흥공단으로 하여금 그	
자금을 융자하게 할 수 있다.	
1.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	1.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
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	<u>(業)</u>
2. 체육 행사의 기획, 수익사업	2.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

<u>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</u> 대리와 관련된 업(業)

- 3. <u>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</u><u>나</u> 제공하는 업
- 4. (생략)
- ④ ~ ⑧ (생 략)
- 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국민 저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,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회법」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.
 - 1. ~ 6. (생략)
 - 7. <u>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</u> 따 른 자금의 융자
 - 8. ~ 12. (생략)
 - ② ~ ④ (생 략)

하는 업

3.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
<u>비스를</u>
4.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제22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<u>.</u>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<u>제17조제3항에</u>

8. ~ 1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